



##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 2026년 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 모집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6년 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  
\*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 세부사업
- 지원목적 : 오픈소스기반 소규모언어모델(sLLM), 검색증강생성(RAG), AI에이전트 등 AI기술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예비창업자) 2026. 7. 1. ~ 2026. 11. 30.  
(초기창업기업, 성장·확산기업) 2026. 7. 1. ~ 2027. 11. 30.
- 지원방식 : 직접지원(자금지원)
- 지원규모 : 총 지원금 14억원 이내, 11개 과제 내외

## II 공고 내용

### ○ 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26. 6. 5.(금) ~ 2026. 6. 29(월), 15: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humancare@iact.or.kr](mailto:humancare@iact.or.kr))로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 모집 개요

구분	예비창업자 (Track A)	초기창업기업 (Track B)	성장·확산기업 (Track C)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대구지역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4년 이상 대구지역 중소기업
기업구분	선정후 개인/법인 등록필요	법인	법인
지원규모	최대 50백만원	연간 과제당 최대 150백만원 (2년간 최대 300백만원)	연간 과제당 최대 200백만원 (2년간 최대 400백만원)
지원기간	26.07.01. ~ 26.11.30.	26.07.01. ~ 27.11.30. 1차년도 : 26.07.01. ~ 26.12.31. 2차년도 : 27.01.01. ~ 27.11.30.	
선정규모	4개 과제 내외	4개 과제 내외	3개 과제 내외
참여형태	단독 수행	중소·중견기업, 비영리연구기관 컨소시엄 가능(대학불가)	
기업부담금	없음	수행기관 유형별 부담 (중소기업 기준 25% 이상)	
비고	선정 후 창업교육* 이수 및 대구시 관내 창업 필수	※26년 연차평가를 통해서 '우수과제(95점이상)'는 계속(27년도)지원 결정	

\* 창업교육 : 과제선정 시 별도의 예비창업자 교육(약 50시간 내외) 이수 필수 및 AI 실증 멘토링, 수요처 매칭, 투자 IR, AIDC(GPU)활용 컨설팅 등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업은 공고일 기준 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하며, 참여 기관은 소재지 제한을 두지 않음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임)
- 예비창업자(Track A)는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협약전) 대구광역시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배정된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SGI서울보증 정부보조금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 협약체결 일정은 평가, 선정 및 협약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협약 시 별도로 확정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 계속지원 과제는 차년도 사업 예산 및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후속지원 여부 결정

○ 제출서류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예비창업자대표 명의로 제출**
-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사업운영기관의 접수 확인 메일 또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사업수행계획서 hwp,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는 pdf 제출 권고
-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2~3일 이전에 제출 권고**
-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된 수행계획서의 내용 변경, 추가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며, 평가 과정에서 별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순번	구분	제출 서류	수량	비고
1	필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필수제출 서류 일괄양식 (신청서, 수행계획서, 발표자료, 요약서, 등)	1부	지정서식 (붙임 제출서류 양식)
2	예비창업자 (Track A)	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각1부	제출일 기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용정보 조회서	1부	
5		중소기업 (Track B,C)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6	표준재무제표		1부	최근 3개년도 ('23~'25년) 제출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 시)		각1부	제출일 기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9	유사중복성 검토 및 신청 자격 확인서*		1부	NTIS 조회 결과서
10	선택	우대사항 제출서류(해당 시)	1부	-

- \*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 <https://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메뉴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유사·중복성 검토 방법 : <http://www.ntis.go.kr> → 과제참여·관리 메뉴 → 유사과제 선택 → 유사과제 시작하기 → 검색결과 PDF 파일로 제출
- 상기 제출 서류는 지원기업(컨소시엄)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예정이며, 지원기업(컨소시엄)은 필요 시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필수 제출 서류는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 시스템 기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모든 서류는 HWP, PDF로 제출하되 기업명\_지원유형과 같이 기업 단위로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 붙임1\_사업자등록증.pdf, 붙임2\_국세·지방세\_완납증명서.pdf 등과 같이 파일명칭 통일

○ 문의처

구분	연락처
사업 담당자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임상원 수석연구원 이메일 : <a href="mailto:swlim77@iact.or.kr">swlim77@iact.or.kr</a> 전화번호 : 053-219-1738
창업교육 담당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주기중 실장 이메일 : <a href="mailto:jukj@ccei.kr">jukj@ccei.kr</a> 전화번호 : 053-759-8138

### III 사업비 편성기준

#### ○ 지원항목

지원분야	지원내용
개발 및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에 따른 제품 등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재료비</li> <li>▶ 기구설계, 제품모델링, 3D프린팅 가공, 등 시제품 외주용역비</li> <li>▶ AI모델 개발위한 데이터 구축 및 가공비</li> <li>▶ AI서비스 개발을 위한 앱, 웹 S/W, AI모델, 제품 H/W개발비</li> <li>▶ AI모델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S/W구독료</li> <li>▶ 제품개발, 마케팅 등 전문가 애로사항 전문가 자문비</li> </ul>
연구개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및 지원인력에 한해서 편성가능</li> <li>▶ 참여연구원의 전공, 업무역할 명확히 정의필요</li> </ul>

#### ○ 사업비 편성비목

비목	세목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참여인력 내부 인건비(정규직)</li> <li>※ 대표자 인건비 지원금 편성불가</li> </ul>	예비창업자 편성불가
	상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참여인력 내부 인건비(계약직)</li> </ul>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제작비, 행사참가비, 교육훈련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정산수수료 등</li> <li>※ USB, 외장하드 등의 저장장치 및 사무용품 구입 불가</li> </ul>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회선사용료, 운송료 등</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수행 관련 장비 및 S/W 임차료, 부스임차비, 등</li> </ul>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수행 관련 소모성 재료비(사무용품 제외)</li> </ul>	
	일반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수행 관련 외주 용역비</li> <li>▶ 제품 H/W제작,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 일반업무의 용역비</li> <li>▶ AI데이터 구축 및 가공비</li> </ul>	
여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출장비(해외 출장비 편성 불가)</li> </ul>	예비창업자 편성불가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비, 행사·간담회·세미나 식대 및 제 경비</li> </ul>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제품개발 등 지식 기반의 업무</li> </ul>	

\* 예비창업자(Track A)는 운영비, 연구용역비 항목만 집행 가능 함

○ 사업비 편성 및 관리 유의 사항

- 사업비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함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함
- 주관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직접 집행하여야 함
- 초기창업기업(Track B), 성장확산기업(Track C)은 용역비(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편성 가능
  - ※ 예비창업자(Track A)는 용역비 편성 제한 없음, 다만 대표자·팀의 직접 수행 역할, 산출물 검수, 기술 내재화 계획을 반드시 기재
- 자산성 범용 기자재(그래픽카드, CPU, 테블릿, PC 등)는 구입 불가하며,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총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인건비 계상 가능
  - ※ 예비창업자(Track A)는 인건비 계상불가
  - ※ 초기창업기업(Track B), 성장확산기업(Track C)의 기업대표는 지원금으로 인건비 계상불가
- 비영리기관에 한해서 지원인력 인건비는 사업인력 총 인건비의 20% 이내에서만 편성 가능

## IV 지원조건 및 제외대상

### ○ 지원조건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기업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
  - ※ 총사업비 대비 기업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 예비창업자(Track A)는 제외(예비창업 기업은 기업부담금 없음)
- 총사업비의 구성 비율은 주관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지원금 : 수행과제의 기업(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

\* 기업부담금 : 수행과제의 기업(컨소시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정부지원금 기준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비영리기관
정부지원금(A)	사업비의 75% 이내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의 100% 이내
기업부담금(B)	사업비의 25% 이상	사업비의 30% 이상	사업비의 0% 이상
기업부담금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필요시 부담
총사업비 (A+B)	100%	100%	100%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수행기업(관)의 인건비로만 매칭 가능

- (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인력이 소속기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은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 사업비 구성 예시

#### < 사업비산정 예시(중소기업+중견 컨소시엄 기준) >

(단위:천원)

구분	기업(관) 유형	정부지원금	기업(관)부담금 (현금+현물)	기업(관)별 사업비	현금부담 (최소)
주관기업	중소기업	120,000	40,000	160,000	4,000
참여기업	중견기업	80,000	34,286	114,286	4,458
합 계		200,000	74,286	274,286	8,458

○ 신청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MY 제재 조회에서 본인제재 확인, 소속기관제재 확인 검색 및 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 다음 각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

1. 과제신청서(계획서) 등 과제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해당 사업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지원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방지)
3.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 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4.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1) 기업의 부도, 휴 · 폐업 상태인 경우
  -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5) 최근 결산 기준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7)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8)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숙박업, 간이과세자
  - 9)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 조건 충족 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 (가)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나) 위 (가)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대구시 관내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10)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11) 기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1개 기업은 1개 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기업의 복수 지원 및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함(주관기업, 참여기업(관) 각각 신청도 불가)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既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지원기업(컨소시엄)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 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과제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V

##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26. 6월)	○ 사업운영기관(경북대)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5.(금) ~ 2026. 6. 29.(월), 15:00까지
↓	
과제신청서 접수 (‘26. 6월)	○ 지원기업(컨소시엄) → 사업운영기관 * 접수 마감일 : 2026. 6. 29.(월), 15:00까지 * E-mail 접수 개시일 : 2026. 6. 5.(금)
↓	
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자 선정 통보(‘26. 7월)	○ 사업운영기관 * 서류검토, 현장점검 * 적합성검토 및 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운영위원회 (‘26. 7월)	○ 사업운영기관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통해 과제 최종 확정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교부 (‘26. 7월~8월)	○ 사업운영기관 → 지원기업(컨소시엄)
↓	
과제 수행 (협약일 ~ ‘26. 11월)	○ 지원기업(컨소시엄) * 사업운영기관 요청 시, 월간 사업수행 보고
↓	
중간보고 및 2차 지원금 교부 (‘26. 10월)	○ 지원기업(컨소시엄) 보고 ↔ 사업운영기관 진도점검 * 사업운영기관은 지원기업(컨소시엄)에 대한 수행상황 등 중간 점검 실시
↓	
과제 결과보고 (‘26. 11월)	○ 지원기업(컨소시엄) → 사업운영기관 과제 결과보고
↓	
결과평가(1차년도) (‘26. 12월)	○ 사업운영기관 → 지원기업(컨소시엄) * 연차평가, 정책 및 예산 등에 따라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정산(1차년도) (‘26. 12월)	○ 사업운영기관 성과관리 ↔ 지원기업(컨소시엄) 정산보고 *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종료 후 5년간 과제 결과 성과(실적)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및 협약 이후 상세 안내 예정

## VI 평가방법

###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등 적합성 검토, 현장점검, 서류·발표 평가를 통한 선정평가 및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 점검방식, 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운영기관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구분	검토항목
접수	접수마감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관련 규정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유사·중복과제 제외 등)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기업/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중대 문제(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개요)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 소수점 첫째 자리(둘째자리 반올림)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최저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함(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평가기준 항목표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목적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이해도</li> <li>○ 제안 AI 서비스의 필요성 및 문제 해결성</li> <li>○ 목표 고객·수요처·활용 대상의 명확성</li> <li>○ 기존 서비스 또는 경쟁 서비스 대비 차별성</li> </ul>	20
AI 서비스 기획 및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서비스 개념, 주요 기능, 운영 시나리오의 구체성</li> <li>○ 적용 AI 기술, 데이터, 모델,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li> <li>○ 협약기간 내 개발·구현 가능성</li> <li>○ 최종 산출물, 정량목표 및 검증방법의 명확성</li> </ul>	25
추진체계 및 수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li> <li>○ 참여인력의 전문성, 역할분담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li> <li>○ 추진일정, 단계별 수행계획 및 협력방안의 구체성</li> <li>○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li> </ul>	25
사업화 및 확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수요 및 고객 적합성</li> <li>○ 수익모델, 판로확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가능성</li> <li>○ 수요처 적용, 실증, 서비스 출시 또는 확산 가능성</li> <li>○ Track별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li> </ul>	20
성과 및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li> <li>○ 매출, 투자, 지식재산권, 인증 등 성과 창출 가능성</li> <li>○ 신규 고용 창출 계획의 구체성</li> <li>○ 지역 AI 생태계와 연계 효과</li> </ul>	10
<b>합 계</b>		<b>100</b>

○ 가산점 기준

- 가산점은 정성평가 총점 산정 후 합산

구분	① 예비창업자	② 초기창업기업	③ 성장확산기업	배점
가산점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1점
	-	-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1점

- 청년창업자 나이 및 창업기준일은 공모일 기준으로 산정
- 가산점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청년창업자 증빙) 주관기관 대표자 신분증 또는 생년월일 확인 가능 서류
- (7년 이내 창업기업 증빙) 사업자등록증 서류

○ 심의·조정(사업운영위원회)

- (개요) 선정 평가결과(순위)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 (심의·조정대상)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 (심의·조정방법) 심의위원회는 선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예산 조정(안)을 확정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 심의·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과제와 협의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심의·조정위원) 외부 전문가 3~5인 내외로 구성
  - \* 필요시 평가위원 중 1인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예정

## Ⅶ 사업 관리방안

### ○ 과제수행 관리

본 세부사업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운영기관으로서 공모, 선정, 협약, 과제수행,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평가 및 성과관리를 총괄한다. 세부사항은 본 공모 안내서, 사업계획서, 협약서 및 관련 제출서식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의 협약 및 수행은 관련 규정과 본 공모안내서를 준용하며,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필요 시 수시 또는 별도 요청 방식으로 진행하며,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운영기관은 과제 수행 중 현장점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컨소시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위탁 또는 용역은 공고 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이후 신규 위탁·용역 추진 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재위탁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과제목표, 수행내용, 예산, 참여인력 등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는 협약서 및 관련 서식에 따름

###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 (공통사항) 지원기업(컨소시엄)은 과제를 대표하여 수행 보고 및 평가 등 요청 자료 제출의 의무를 가짐
- (중간보고) 사업운영기관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중간 점검 (현장 방문 등) 및 실태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서 등 사업운영기관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과제 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결과평가) 과제 완료 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함
  -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
  - \* 평가 결과 95점 이상을 획득한 과제는 "우수과제"로 선정될 수 있으며 차년도 계속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 사업추진상황 및 차년도 예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 제재 조치

- 과제수행 중 지원기업(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지원기업(컨소시엄)에 대해 일정 기간 기금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자료 보안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이외에 사업운영기관(경북대)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사업운영기관(경북대)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개인정보보호(공통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법령·고시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참고)
  -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http://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참고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사업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사업운영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필요 시, 사업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운영기관이 사업 관리 과정에서 식별한 미흡 사항을 보완 요청할경우 조치해야 함
- 제공받은 또는 수집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즉시 사업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파기·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협약사항 및 수요기관 보안규정 위반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및 사법당국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고, 향후 사업운영기관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성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 (결과물 소유권) 민간이 사업기간동안 협력하여 정부 지원으로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 서비스 결과물, 지식재산권 등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귀속함
- (정보보안 의무) 지원기업(컨소시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사업운영기관이 필요시 요청하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위·수탁 단계별 조치사항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정보유출 및 비인가 활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정보보안 중점관리대상) 과제수행과정에서 취득한 AI 관련 데이터
- (일자리) 과제 신청기업은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과제 종료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업운영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컨소시엄)은 본 사업 결과물 활용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운영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사업의 성과 활용과 관련되어 사업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전시회, 세미나 등 참여 협조
- (성과활용) 지원기업(컨소시엄)은 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사업운영기관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과제 종료 연도부터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 요구 시 제출(5년간, 증빙 포함)하여야 함
- 지원기업(컨소시엄)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사업운영기관 등에 적극 협조
-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일체의 증빙 필수 제출

○ 관련 규정

- 본 사업운영기관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동 규정 제42조에 의한 부속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며 상기 규정 및 부속 지침 등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하여 시행

1.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2.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3.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4.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5.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6.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7.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8.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1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8호)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제35조(채권확보)
12.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제8조(계약보증금),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2항),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 관련 규정 위반 시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음